

1. 개정이유

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별도정원 연장('22. 7. 1. ~ '23. 4. 30.) 및 노후 도시 정비 업무 추가에 따라, 추가된 업무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기능, 각 과별 명칭, 부서별 정원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노후 도시 정비 업무 추가(안 제2조 기능)

나. 추가된 노후 도시 정비 업무를 고려하여, 도시재생과 노후 도시 정비를 포괄할 수 있는 '도시정비' 용어를 각 과 명칭에 반영
(안 제3조 조직 및 구성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,

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일부개정훈령안

도시재생사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, 제5호 및 제7호 중 “도시재생사업”을 각각 “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 정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거버넌스 구축 및 역량강화”를 “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

12.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14.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

15.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현황 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

16.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1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3조제2항 중 “도시재생정책과, 도시재생역량과, 도시재생경제과”를
 “도시정비정책과, 도시정비경제과, 도시정비산업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
 항 중 “도시재생정책과장, 도시재생역량과장, 도시재생경제과장”을 “도
 시정비정책과장, 도시정비경제과장, 도시정비산업과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22년 12월 31일”을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계	고위공무원	4급	4.5급	5급	6급 이하	공공기관
계	42 (17)	1 (1)	4 (4)	3 (1)	12 (6)	18 (5)	4
도시정비정책과	12 (6)	1 (1)	1 (1)	1	3 (2)	5 (2)	1
도시정비경제과	9 (4)	-	1 (1)	1 (1)	2 (1)	4 (1)	1
도시정비산업과	9 (3)	-	1 (1)	1	3 (1)	3 (1)	1
도심재생과	12 (4)	-	1 (1)	-	4 (2)	6 (1)	1

※ ()안은 별도정원임.

- 별도정원 중 4.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,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
 식품부 소속 공무원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기능) ‘도시재생사업기획단’ (이하 ‘기획단’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/p> <p>1. <u>도시재생사업</u>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법령·제도 운영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5. <u>도시재생사업</u> 지원을 위한 연구·개발</p> <p>6. (생략)</p> <p>7. <u>도시재생사업</u>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</p> <p>8. 도시재생사업 <u>거버넌스</u> 구축 및 <u>역량강화</u>에 관한 사항</p> <p>9. <u>도시재생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등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·11. (생략)</p> <p>12. <u>우리동네살리기, 주거지원형, 일반근린형, 중심시가지형, 경제기반형 등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관리</u></p> <p>13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2조(기능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정비</u> ----- 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정비</u> ---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<u>도시재생사업 및 노후 도시정비</u> --</p> <p>8. ----- <u>관련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</u>-----</p> <p>9. <u>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등의 운영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0.·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12. <u>도시재생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14. <u>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</u></p>

15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활성화
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<신 설>

<신 설>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(생 략)

② 기획단 밑에 도시재생정책
과, 도시재생역량과, 도시재생
경제과, 도심재생과를 둔다.

③ (생 략)

④ 도시재생정책과장, 도시재생
역량과장, 도시재생경제과장,
도심재생과장은 부이사관, 서기
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
다.

⑤·⑥ (생 략)

제9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
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
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
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
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
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

시재생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

15.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현황
조사 및 분석에 관한 사항

16. 노후 도시 정비를 위한 종합
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
17.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및 노
후 도시 정비 활성화를 위하
여 필요한 사항

제3조(조직 및 구성) ① (현행과
같음)

② ----- 도시정비정책
과, 도시정비경제과, 도시정비
산업과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도시정비정책과장, 도시정비
경제과장, 도시정비산업과장--

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유효기간) -----

-- 2024년 12월 31일-----

을 가진다.

-----.